

# 2026년도 위(Wee) 프로젝트 운영 계획



2026. 2.

서울특별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

# 2026 위(Wee) 프로젝트 운영 사업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변경 항목                    | 2025년도                                                                                    | 2026년도                                                                                               |
|------------------|--------------------------|-------------------------------------------------------------------------------------------|------------------------------------------------------------------------------------------------------|
| Wee<br>센터<br>운영  | Wee센터<br>구성              | · 총 26개소(정책특화 1, 지역Wee센터 23, 가해특화 1, 피해특화(위탁) 1)                                          | · 가해특화 꿈세움Wee센터 위탁 사업 종료 및 구로Wee센터 신설<br>· 총 26개소(정책특화 1, 지역Wee센터 24, 피해특화(위탁) 1)                    |
|                  | Wee센터<br>상담 활성화<br>방안 수립 | · 상담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Wee센터 운영계획서 수립                                                           |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지원 활성화 및 실적 보고 추가                                                                    |
|                  | Wee센터<br>상담기록<br>관리      | · 상담기록: 서울Wee그램, 비전자기록<br>· 실적보고: 나이스(NEIS)<br><br>· Wee센터 상담기록 관리 지침 및 「서울Wee그램」 개발 · 배포 | · 「서울Wee그램3.0」 기능개선 · 배포<br><br>· Wee클래스 및 Wee센터를 위한 상담기록관리 안내서 배포(본청)·연수(본청/지원청)                    |
|                  | Wee센터간<br>협력성 강화         | · 업무담당자 회의 (반기별)<br>· Wee센터 실장 협의회 (분기별)                                                  | 동일                                                                                                   |
|                  | 상담역량강화<br>연수             | · 사회정서교육을 포함한 상담역량강화 연수 운영                                                                | · 상담기록 관리, 사회정서교육을 포함한 상담역량강화 연수 운영<br>· Wee센터 2차 역량강화연수 강화(본청)<br>· 전문상담(교)사 사례회의 지원(본청 주관, 지원청 협력) |
|                  | Wee센터<br>평가              | · 위(Wee) 센터별 자체평가                                                                         | · 동일<br>· 단, 실적보고 변동에 따라 Wee센터 평가 기준 변경                                                              |
| Wee<br>클래스<br>운영 | Wee클래스<br>구축             | · 추경 확보하여 진행                                                                              | · 본예산 확보                                                                                             |
|                  | Wee클래스<br>운영             | · 학교기본운영비에 150만원 통합교부<br>·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교 미교부                                            | · 학교기본운영비 교부: 동일<br>· '상담기록관리 관련 연수' 참여 및 관리 철저                                                      |

# 목 차

## I . 2026 위(Wee) 프로젝트 운영 계획

|                                          |   |
|------------------------------------------|---|
| 1. 추진 배경 및 근거 .....                      | 1 |
| 2. 위(Wee) 프로젝트 이해 .....                  | 2 |
| 3. 비전 및 체계 .....                         | 4 |
| 4. 2026 추진 계획 .....                      | 5 |
| [첨부자료]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 8 |

## II . 2026 위(Wee) 클래스(학교상담실) 운영 계획

|                   |    |
|-------------------|----|
| 1. 추진 근거 .....    | 10 |
| 2. 추진 목적 .....    | 10 |
| 3. 추진 방침 .....    | 11 |
| 4. 세부 추진 계획 ..... | 11 |
| 5. 기대 효과 .....    | 20 |

# I. 2026 위(Wee) 프로젝트 운영 계획

## 1

## 추진 배경 및 근거

### □ 추진 배경 및 목적

- 2008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선정, 위기학생 지원 핵심 정책으로 위(Wee)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종합적인 다중 안전망 체계 구축을 통해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에게 ‘심리평가-상담-치유’ 서비스 제공
- 위기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 추진 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항의2
- 2026년 학생성장 통합지원 사업(국가지책 특별교부금) 계획 안내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4138, 2025.11.3.)
- 2026년 국가지책 특별교부금 사업(5-21 학폭대응) 계획 알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2897, 2025.11.4.)
- 2026 서울교육 주요업무(정책기획관-12497, 2025.12.31.)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안내(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10, 2026.1.5.)

## 2

## 위(Wee) 프로젝트 이해

## □ 개념

위(Wee) = 'We(우리들) + education(교육)',  
 'We(우리들) + emotion(감성)'의 합성어

- ⊕ 위(Wee): 나(I)와 너(You) 속에서 우리(We)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하고, 감성과 사랑이 녹아있는 위(Wee) 공간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찾아내자는 의미
- ⊕ 위(Wee) 프로젝트 대상: 위기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
- ⊕ 위(Wee) 프로젝트 체계: 단위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연결된 다중 안전망
- ⊕ 위(Wee) 프로젝트 전략: 학생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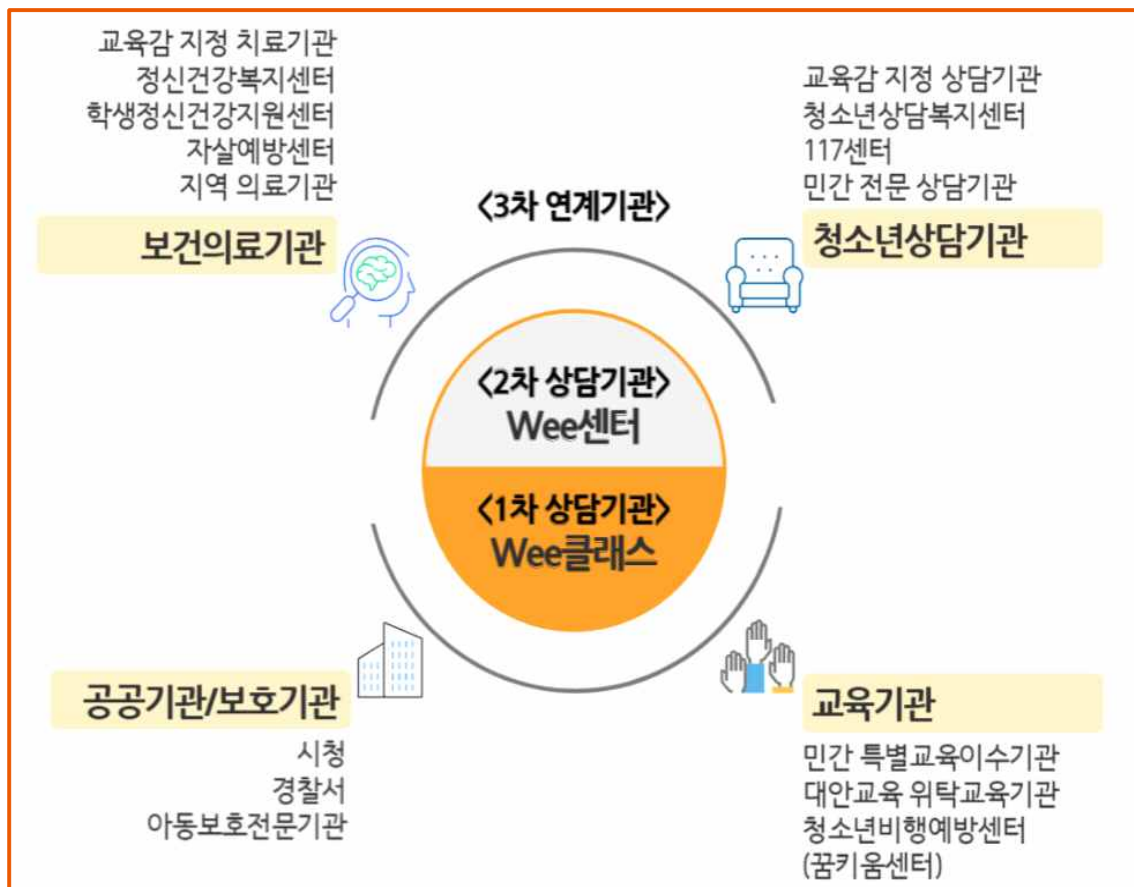
## □ 위(Wee) 프로젝트 기관 주요 기능

| 기관 (로고)                                                                                           | 주요기능                                                                                     | 대상                                            |
|---------------------------------------------------------------------------------------------------|------------------------------------------------------------------------------------------|-----------------------------------------------|
| 위(Wee) 클래스<br> | 학교에 설치한<br>학교상담실로서, 학생 위기에방 및<br>학교생활 적응을 지원                                             |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br>학교에 재학 중인<br>모든 학생         |
| 위(Wee) 센터<br>  | 교육(지원)청에 설치한<br>학생상담 지원시설                                                                |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상담<br>희망 학생 및 학교에서<br>의뢰한 (위기)학생 |
| 학교폭력 피해학생<br>전담기관 (위드위센터)                                                                         | 학교폭력 피해로 집중 치유·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br>일시보호 및 학생 맞춤형 치유·교육·체험 지원                             |                                               |
| 상담·치료기관                                                                                           | 위기상황으로 심층상담,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br>위기 유형별 상담 혹은 병의원 심리치료 지원<br>※ 외부 상담기관 및 병의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지정 |                                               |

□ 위(Wee) 프로젝트 상담·치유 단계



□ 서울 위(Wee) 상담 안전망(Wee-Network)



## 3

## 비전 및 체계

|    |                                                                                                                                                       |
|----|-------------------------------------------------------------------------------------------------------------------------------------------------------|
| 비전 | 상담·치유를 통한 심리정서 위기학생의 회복 및 학교적응력 제고                                                                                                                    |
| 목표 | 위기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종합적 다중 안전망 협력체계 강화                                                                                                                   |
|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Wee) 클래스의 학교 상담 활성화</li> <li>위(Wee) 센터의 관내 학교 및 위기학생 밀착 지원</li> <li>서울 위플(WeepI) 운영을 통한 상담 접근성 확대</li> </ul> |

|   |               |                      |                                                                                                                                                                               |
|---|---------------|----------------------|-------------------------------------------------------------------------------------------------------------------------------------------------------------------------------|
| 1 | 위(Wee) 센터 운영  | ① 위(Wee) 센터 운영 내실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개 위(Wee) 센터 운영</li> <li>- 위(Wee) 센터 상담 활성화 방안 수립·운영</li> <li>- 「서울 위플(WeepI)」 운영·관리</li> </ul>                                     |
|   |               | ② 심리정서 위기학생 상담·치유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정서 위기학생 상담 및 치유 지원</li> <li>- 학생맞춤통합지원 상담지원</li> <li>- 위(Wee) 센터 연계 상담·치료기관 및 자문의 운영</li> <li>- 학교폭력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li> </ul>      |
|   |               | ③ 학교상담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대규모학교 출장상담</li> <li>- 위기개입(컨설팅·안정화교육·특별상담 등) 지원</li> <li>- 전문상담(교)사 사례관리 연수 운영</li> <li>- 집단상담 및 심리교육 운영 지원</li> </ul> |
|   |               | ④ 상담 역량강화 연수 및 자료개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상담(교)사 전문성신장 연수, 컨설팅, 멘토링 등</li> <li>- 상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자료 개발 및 보급</li> <li>- 위(Wee) 센터 업무담당자 및 실장 협의회 정례화</li> </ul>               |
|   |               | ⑤ Wee-Network 운영·관리  | - 지역사회 상담 유관기관 연계 협의체 운영                                                                                                                                                      |
| 2 | 위(Wee) 클래스 지원 | ① 단위학교 상담활동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 수립·안내</li> <li>- 상담기록관리 안내서 배포</li> </ul>                                                                           |
|   |               | ② 전문상담(교)사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상담(교)사 멘토링·연수 지원</li> <li>- 전문상담사 운영 지원 계획 수립·안내</li> </ul>                                                                        |
|   |               | ③ 위(Wee) 클래스 점검·컨설팅  | - 위(Wee) 클래스 점검 및 컨설팅 운영                                                                                                                                                      |

## 1 위(Wee) 센터 운영

### □ 사업 개요

- ⊕ (사업내용) 심리정서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상담·치유 통합 서비스 지원
- ⊕ (운영) 직영 위(Wee) 센터 25기관, 위탁 위(Wee) 센터 1기관(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기관 WithWee센터), 총26기관
- ⊕ (예산과목) 정책]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학생생활지도 세부]학생상담활동

### □ 추진 방향

- ⊕ (상담기능 강화) 대면·비대면상담 및 출장상담(개인·집단상담) 등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적극 지원,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및 대규모학교별 담당자 지정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적극 운영
- ⊕ (상담예약시스템 활성화) 「서울 위플(Weepl)」을 통한 상담신청 및 관리 활성화

### □ 추진 내용

- ⊕ 「서울 위플(Weepl)」 기능 개선 및 운영·관리
- ⊕ (평가 개선) 위(Wee) 프로젝트 강조사항에 따라 평가지표 및 문항 개선
- ⊕ (학교 밀착지원) 출장상담, 위기개입, 학교 요구에 맞춘 상담·교육·치유 사업 수행
  - 위(Wee) 클래스 운영 지침 안내 및 우수사례 공유, 멘토링, 자문의를 통한 사례 회의 운영 등 위(Wee) 클래스 운영에 도움 제공
  -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학교 상담활동 지원 강화
  - 모든 지역 위(Wee) 센터가 위기지원의 구심점 역할 및 전문성신장 교육 기능 수행

- ⦿ (역량 강화) 위(Wee) 센터 업무담당자 및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강화
  - 위(Wee) 센터 업무담당자 회의 및 실장 협의회 정례화
  - 위(Wee) 센터 워크숍 등으로 마인드제고, 업무처리 역량 강화
  - 위(Wee) 센터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및 자문의 사례회의 확대
- ⦿ (자료 개발) 학생 특성 및 위기 유형별 심리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상담 지원을 위한 매뉴얼·가이드 자료 등 제작·배포
- ⦿ (Wee-Network) 지역사회 상담 유관기관 연계 ‘학생 상담 안전망’ 관리
  - 지원 의지가 강한 전문적 상담·치료기관을 지정 및 위촉하여 특별상담과 상담·치료기관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
  - 지원청별 지역 상담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의회 운영

## 2 위(Wee) 클래스 지원

### □ 사업 개요

- ⦿ (내용) 학교폭력 피해 및 부적응 등 위기학생에 대한 일차적 상담을 담당하는 위(Wee) 클래스의 상담활동 지원
- ⦿ (운영기관) 학교 위(Wee) 클래스

### □ 추진 방향

- ⦿ 위(Wee) 클래스가 학생대상 ‘1차 상담·치유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서 상담 공간 구축,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 등 지원
- ⦿ 초·중·고등학교 위(Wee) 클래스 운영비(150만원)를 학교기본운영비(기타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 ※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교 제외

## □ 추진 내용

⦿ (Wee클래스 운영 계획) 학교폭력 피해 및 부적응 학생 예방, 위기학생 조기발견 ·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 수립 · 추진 안내

⦿ (전문상담사 운영 계획) 학교 전문상담사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안내

※ '20학년도부터 전문상담사가 9.5개월 근무에서 12개월 상시근무제로 변경됨에 따라 '방학 중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 수립·운영' 내용 포함(방학 전 별도 안내 없음)

⦿ (상담주간) 학기초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해 '신학년적응주간' \*에 운영 가능

\*신학년초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명상, 사회정서교육, 관계가꿈 등의 체계적인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간(별도 안내 예정), 이때 상담주간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Wee클래스 구축 지원) 교실 1칸 이상 규모의 공간 확보 필수, 학교당 3,000천원 구축비 지원

⦿ (점검 · 컨설팅) 위(Wee) 클래스 운영 현황 점검 및 학교상담실 운영 방법, 상담 기록, 사례관리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제공

## □ 주요 추진 일정

| 시기    | 세부 시행 계획                                                                                                                                                                            |
|-------|-------------------------------------------------------------------------------------------------------------------------------------------------------------------------------------|
| 1/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 안내 (2월)</li> <li>■ 학교 전문상담사 운영 지원 계획 수립·안내 (2월)</li> </ul>                                                                |
| 2/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Wee) 클래스 점검 및 컨설팅 계획 수립·안내(4월)</li> <li>■ 지원청별 위(Wee) 클래스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제출(5~6월)</li> <li>■ 위(Wee) 클래스 구축 지원 계획 안내 및 구축비 지원교 선정</li> </ul> |
| 3/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Wee) 클래스 구축비 학교 교부(7~8월)</li> <li>■ 위(Wee) 클래스 구축 결과 제출(12~2월)</li> </ul>                                                                |
| 4/4분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분야(Wee프로젝트) 유공자 교육부장관 표창(11월)</li> <li>■ 「서울 위플(Weepl)」 매뉴얼북 개정판(Wee클래스용) 제작·배포(12~2027.2월)</li> </ul>                    |

[붙임]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전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위(Wee)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관한규정 [시행 2020.3.2.]



### ● 주요 내용 일부 발췌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기관”이란 교육감 등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Wee) 클래스”란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
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 클래스) ①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위(Wee) 클래스의 장이 된다.

② 위(Wee) 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
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
6. 그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Wee) 클래스는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전문 상담기관 등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Wee) 클래스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 등은 ‘전문상담사’ 등을 일괄 채용하여 위(Wee) 클래스에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위 센터)** ① 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 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위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Wee) 센터의 장은 당해 교육감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Wee) 센터의 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한 학업중단숙려제 지원
4. 상담 내용 및 위기수준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위기학생 치유 등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
5. 사업 종사자 연수, 컨설팅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6.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7.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속 상담지원
8.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Wee) 센터의 장은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상담기록관리시스템)** ① 사업기관의 장은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 이라고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 ①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여 사업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II. 2026 위(Wee) 클래스[학교상담실] 운영 계획



1. 추진 근거
2. 추진 목적
3. 추진 방침
4. 세부 추진 계획
5. 기대 효과

## II. 2026 위(Wee) 클래스[학교상담실] 운영 계획

### 1

### 추진 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제1항의2
- 2026년 학생성장 통합지원 사업(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계획 안내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4138, 2025.11.3.)
- 2026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5-21 학폭대응) 계획 알림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2897, 2025.11.4.)
- 2026 서울교육 주요업무(정책기획관-12497, 2025.12.31.)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안내(교육부 학생정서지원과-10, 2026.1.5.)
- 2026 위(Wee) 프로젝트 운영 계획

### 2

### 추진 목적

- 학교폭력, 부적응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에 대한 예방·회복·발달적 차원의 학교상담 지원
- 학생의 성장·발달 촉진을 위한 상담 제공 및 사회적 지지자 역할을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긴밀한 협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학생을 위한 촘촘하고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운영

## 3

## 추진 방침

- ⊕ 위(Wee) 클래스는 단위학교의 ‘1차적 상담’을 지원하는 학교상담실로서, 학교 폭력 피·가해 및 부적응 등 위기학생에게 상담·치유·교육 지원
- ⊕ 위(Wee) 클래스 설치교는 위기학생 조기발견·상담 지원,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상담 지원 등에 대한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미설치교는 ‘학교 자체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상담활동 운영
- ⊕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대면 및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 운영
- ⊕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학교기본(기타)운영비에 위(Wee) 클래스 운영비(150만원) 포함하여 교부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교는 제외
- ⊕ 쾌적한 상담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위(Wee) 클래스 구축비 지원
- ⊕ 학기초 위(Wee) 클래스 운영(운영 지침, 상담실적 보고 방법 및 상담 기록관리 방법, 우수사례 등) 관련 연수 지원 (각 지역 위(Wee) 센터)
- ⊕ 위(Wee) 클래스 자체점검 및 교육(지원)청 검토를 통해 운영 현황 파악, 필요시 컨설팅 지원
- ⊕ 학생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또는 외부 상담·치료기관에 학생 의뢰

## 4

## 세부 추진 계획

### 1 학교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운영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개정판, 2025) 참고

#### □ 구성

- ⊕ 위원장(교장), 부위원장(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 ⊕ 학년 초, 학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함

※ 학교 내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예: 위기관리위원회, 학생맞춤통합지원팀 등)와 통합 운영 가능

## □ 역할

- 매년 학생마음건강증진(자살예방) 계획 수립
- 학교 위기사안(자살시도·자해·자살 등) 논의 및 개입, 관리방안 협의
- 학생별 자살시도(자해) 발생요인 분석 및 대책 협의
- 위기사안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사전 위기개입 절차 마련 및 업무분장
- 위기개입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위기사안 발생 시 개입
- 운영 유의사항
  - 참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정보 보안 서약서 징구
  -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및 학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2 위(Wee) 클래스 운영 기반 마련

### □ 위(Wee) 클래스 구축 지원

- (지원 대상) 교실 한 칸 이상 확보하여 신청한 학교
  - (예산) 교당 금30,000천원(금삼천만원) 이내
  - (선정 심사) 공간 확보(필수), 전문상담(교)사 배치 여부, 위(Wee) 클래스 운영 의지 및 운영비 편성 여부 등 고려
- 설치 규격
  - 교실 한 칸 규모 이상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공간, 휴게·대기공간, 전문상담(교)사 사무공간 확보
  - 상담실 입구에 『학생공감 상담실(Wee클래스)』 현판 및 돌출 표찰 부착
- 필수 시설
  - 방음시설을 갖춘 개인상담실 (문으로 공간 분리)
    - ※ 개인상담실 문은 ‘상담중’ 임은 확인 가능하나 내담자의 얼굴은 식별되지 않도록 시공

- 상담기록에 필요한 인터넷, 컴퓨터, 전화 시설, 상담기록물 보관용 캐비닛 등
-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쾌적한 환경 조성

#### 🕒 상담용 물품 비치

-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심리검사지 및 상담 관련 책자
- 언어적 상담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피규어 등 매체 상담 용품 등

### □ 위(Wee) 클래스 예산 편성

- 🕒 위(Wee) 클래스 운영비(150만원)를 초·중·고등학교 기본(기타)운영비에 포함하여 교부 → 반드시 교당 금1,500천원(금일백오십만원) 이상 편성

※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사립교는 자체 편성 권장

#### 🕒 운영 내용

- 생명감수성 함양교육 및 캠페인활동, 위기학생 지원 및 학교적응력 제고 교육활동
- 위(Wee) 클래스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한 홍보
- 학생 상담 도구 및 심리검사지 구입·실시, 학생용 간식비
- 고위기학생 대상 외부 기관 연계 상담·치료비 지원 및 자문의 특별상담 운영
- 교직원 및 보호자 자문 및 상담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 위(Wee) 클래스 관리 유의사항

- 🕒 위(Wee) 클래스에는 전문상담(교)사가 근무하며,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상담업무 담당교사가 근무 가능
- 🕒 위(Wee) 클래스 근무자는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 수립, 예방교육활동, 심리정서 지원 활동, 홍보활동 등 학교 상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
- 🕒 학생상담 활성화 및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를 위하여 전문상담(교)사 이외의 교직원 근무 불가
- 🕒 교직원 휴게실이나 교과교실 등으로 활용 불가하며,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

### ③ 위(Wee) 클래스 주요 업무

#### □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 수립

##### -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 필수 포함 사항 -

1. 심리정서 위기학생을 위한 예방중심 교육활동 및 상담 계획 수립·집행
2. 상담기록 및 상담실적 관리 및 보고, 위(Wee) 클래스 운영 평가 및 개선
3. 보호자 및 교사에 대한 상담·자문, 교육 지원
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기관과 연계·협력 활성화
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
6.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프로그램 지원
7. 그 밖에 학생 심리평가,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위(Wee) 클래스 운영 프로그램(예시)

| 구분                  |               | 내용                                                               |
|---------------------|---------------|------------------------------------------------------------------|
| 상담<br>및<br>치유<br>지원 | 내방상담          | ▪ 개인상담, 집단상담, 보호자상담                                              |
|                     | 전화상담          | ▪ 학생 상담, 보호자 상담                                                  |
|                     | 온라인상담         | ▪ 홈페이지, 기관이메일, SNS를 활용한 상담, 화상상담 등                               |
|                     | 심리평가          | ▪ 성격, 정서, 학교적응 관련 등                                              |
|                     | 치유 지원         | ▪ 매체(미술, 음악, 연극 등) 치유프로그램 연계<br>▪ 위(Wee) 센터, 병원, 전문심리치료기관 연계     |
| 교육<br>및<br>연수       | 예방교육          | ▪ 심리정서 안정교육, 생명감수성 함양 교육, 사회정서교육 등                               |
|                     | 특별교육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에 따른 특별교육                                     |
|                     | 또래상담          | ▪ 또래상담 운영 · 지원                                                   |
|                     | 교사연수          | ▪ 교원연수 지원 및 자문<br>▪ 일반교사 대상 상담 관련 연수 운영 및 안내                     |
|                     | 보호자연수         | ▪ 보호자 대상 자녀 심리정서발달, 상담 관련 연수                                     |
| 지역사회<br>연계          | 지역사회<br>자원 활용 | ▪ 위(Wee) 센터 및 외부 유관기관 연계 협력망 구축관리                                |
| 기타                  | 홍보 및 기록관리     | ▪ 학급으로 찾아가는 홍보활동, 교원 및 보호자 대상 홍보<br>▪ 상담기록물 작성 및 관리, 통계 관리, 보고 등 |

## □ 학생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활동

- ⌚ 학생상담 관련 사업 계획(개인·집단 상담 활동 등) 수립 및 안내
- ⌚ 학교 생명존중위원회 참여 및 위기학생 관리
- ⌚ 파·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상담<sup>1)</sup>, 상담 결과 보고<sup>2)</sup>,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 학생상담을 위한 심리검사 실시
- ⌚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생 상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관심군학생 상담·관리 및 외부 연계
- ⌚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혹은 지원
- ⌚ 학교상담기록 관리 및 보고
- ⌚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 활동 추진
  - (예방활동) 생명감수성 함양교육·캠페인활동 등
  - (적응지원)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소그룹 집단상담 및 학급단위 상담 프로그램 운영

##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지원

-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지원
  -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제5호, 제3항
  - (운영) 학교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교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운영 지원 ※ 「단위학교 구성원 누구나 활용가능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등 참고 📎 [자료 다운로드](#)
  - (세부지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특별교육 운영 계획」
    - ※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에서 별도 안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1, 동법 제17조 제1항의 5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 보호자 및 교원 대상 상담 관련 교육 · 자문

- 보호자 및 교원의 학생 상담 및 심리지원에 필요한 자문 및 협력
- 보호자와 교원의 상담인식개선, 자녀 · 학생과의 의사소통 방법 등 연수 프로그램 운영

## □ 지역 상담 유관기관 연계 · 협력

- 평소 관할 위(Wee) 센터 및 교육감 지정 상담 · 치료기관<sup>3)</sup>,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상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망 구축
- 위기학생 발생 시 적극 연계 및 필요시 상담 · 치료비 지원

## □ 상담 기록물의 관리 및 보고

- 상담 기록물: 위(Wee) 클래스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 접수하는 모든 형태의 기록물
- 상담 기록물의 범위

| 분류               | 운영 관리 기록                                | 상담 활동 기록                                            |
|------------------|-----------------------------------------|-----------------------------------------------------|
| 정의               | 위(Wee) 클래스 운영 및 관련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  | 상담의 사실과 내용에 대한 기록으로, 상담 접수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 |
| 예                | 위(Wee) 클래스 운영 계획서, 각종 협의록, 심리검사 도구 대장 등 | 상담 신청서, 상담 동의서, 상담일지, 상담확인서, 외부기관 연계 동의서 등          |
| 보존기간<br>(과제관리카드) | 상담활동운영(5년)                              | 상담 일지 관리(10년)                                       |

※ 참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2026). 「학교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 및 서울시교육청(2026 배포예정) 「Wee클래스 및 Wee센터를 위한 상담 기록관리 안내서」

## ● 상담 기록물의 특성 및 유의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 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학교장)
- 기관장이 지정한 자(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사)는 상담 기록물을 관리하며, 생산 · 등록 · 접수 · 분류 · 편철 · 정리 · 보관하는 역할 수행
- 상담 기록물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포함하므로 처리 · 보관 및 비밀유지에 유의

3) 교육감 지정 상담·치료기관 명단은 지역 위(Wee) 센터에서 안내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기관장 및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는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4항

## 🕒 상담 활동 기록의 방법

- **[필수]** 상담 실적(나이스(NEIS)) 및 상담 내용 기록(상담일지)

### (1) 상담 실적

- 나이스(NEIS) 업무담당자에게 [상담관리] 사용 권한 부여받아 작성
- 나이스(NEIS) 상담현황 등록: 나이스(NEIS)-[상담관리]-[상담현황]

※ 나이스(NEIS) 상담현황은 상담실적을 보고하는 용도이므로 유형, 주제, 회기 수, 주요 목표 및 경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 작성하고 객관적이고 윤리적 관점에서 검토된 표현 사용 권장

### (2) 상담 내용

- 문서 프로그램(한글, 엑셀 등)으로 기록 ※ 수기기록은 권장하지 않음
- 상담기록물 정리 시(연 1회)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 비전자문서 첨부물 분리 등록하여 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상담일지 스캔본을 첨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 상신 불가, 비전자문서 첨부물분리등록 방법을 활용하여 정리 및 이관

※ 「(구)Wee클래스용 상담시스템」 사용 불가(민주시민교육과-4759, 2025. 4. 1.)

## 🕒 상담 기록물의 보고

### (1) 운영 활동 기록 보고

-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생산·관리
- 학생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담겨있는 경우(예: 치료비 지원 계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6호) 및 직원열람제한 기능을 활용하여 접근 최소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 (2) 상담 활동 기록

- 상담 실적 보고: 월 1회, 나이스(NEIS) 상담 통계 활용하여 상담 현황 관리 및 보고
- 상담 내용 보고: 대면 보고 형태로,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필요한 시점에 보고

(예: 자살·자해 등 위기 사안 발생 혹은 위기 징후 발견 시, 정보공개청구 시,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합당한 관리자 요청 시 보고)

※ 상담일지의 열람 및 보고는 지양

#### 4 기타 유의사항

##### □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

🕒 우리교육(지원)청 및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전문상담 역량 강화 교육 참여

※ 학교상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허가 하에 연수 참여

🕒 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

##### □ 법령 및 지침 준수

🕒 전문상담교사는 학생상담 및 심리치유 지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함

- 비교과교사로서 교과수업을 담당할 수 없음(담임교사의 교과수업 시간 대체 금지)
- 강제적, 일률적인 창의적체험활동 수업 부과 금지
- 최소한의 창의적체험활동 수업을 부과할 경우, 사전에 상담업무 지장 여부를 협의 하고(「위(Wee) 클래스 운영계획」 등 참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교육 계획에 포함하는 절차 준수

🕒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수업시수 확보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수업시간 중 상담은 보호자의 동의 필수

- 학교교육계획에 의거한 상담활동 이외에, 수업중 학생상담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라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함

- 긴급 위기상담 등을 위해 학년도 초에 사전 일괄 동의서(보호자의 서명(날인) 필요) 수합

🕒 출석으로 인정되는 상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특별교육 이수시간에 포함되는 상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에 의한 조치에 따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출석일수 산입 기간에 포함되는 상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기간에 포함되는 상담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에 의한 학업중단 숙려제 상담
- 「학업성적관리지침」에 규정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담

※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판단은 학년초 학교 구성원 간 협의에 의해 사전에 규정하거나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판단함(매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및 「학업성적관리지침」 참고)

## □ 전문상담사 운영 관련 ※ 「2026 전문상담사 운영 지원 계획」 별도 안내

### 🕒 전문상담사에게 수업 부과 불가

- 전문상담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원이 아니므로 수업 부과 불가하며, 수업 보조 목적으로 투입하지 않음
- 또래상담 동아리 운영 시 정교사가 지도교사 업무를 담당하며, 또래상담 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전문상담사에게 상담교육 지원 업무 부과할 수 있으나, 동아리 활동 관련 생활기록부 기재 업무는 부과할 수 없음

### 🕒 전문상담사 업무분장 유의사항

- 전문상담사는 기본적으로 상담활동 및 상담 관련 행정업무 담당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지원

※ 위(Wee) 프로젝트 사업관리 운영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준수

- 지양 업무: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 위촉, 교육복지사업, 장학금, 진로·진학 관련 업무, 정교사 대상 연수의 대리출장 등

※ 전문상담사가 담당할 수 없는 업무 부과로 인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요망

### 🕒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근무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교원·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퇴근시간 후 부여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명시하여 전문상담사에게 서면 통보 (사립학교는 계약서에 명시)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유의

🕒 **근태관리: 위(Wee) 클래스 특성에 따라 학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

🕒 **초과근무**

- 학교상담 시간을 홍보하고 근무시간 내 상담을 충실히 진행하며, 부득이하게 상담으로 인하여 초과근무가 예측되는 경우, 사전에 학교장의 초과근무 명령(결재)을 받은 후 초과근무 실시함

## 5

## 기대 효과

- 🕒 단위학교 위(Wee) 클래스 상담·치유 지원 활동 활성화
- 🕒 학생 상담·치유 지원을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및 학업중단 예방
- 🕒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치료·회복 지원을 통한 공교육 강화